

1882년 왕세자가례에 관한 의궤의 체재와 편찬 과정

Organization and Compilation Process of the Ritual Protocol
on Crown Prince Yi Cheok's Wedding Ceremony in 1882

김 봉 좌 (Kim, BongJwa)*

◁ 목 차 ▷

- | | |
|-------------------|--------------------|
| 1. 서 론 | 3. 가례도감의궤의 편찬 과정 |
| 2. 가례도감의궤의 체재와 내용 | 3.1 의궤청의 설치와 물자 마련 |
| 2.1 도청의궤 | 3.2 관련 기록물과의 비교 분석 |
| 2.2 각방의궤 | 4. 결 론 |
| | <참고문헌> |

<초 록>

본 연구는 1882년(고종 19) 왕세자 이척(순종, 1874~1926)의 혼례를 기록한 『왕세자가례도감의궤』의 내용과 관련 기록물을 비교 분석하여 그 편찬 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당시 가례는 역대 왕세자 혼례 가운데 가장 성대한 규모로 치러졌으며, 관련 기록으로 『왕세자가례등록』과 58건의 발기 등이 현전하고 있으므로 실증적 분석이 가능하다. 『왕세자가례도감의궤』는 가례도감의 조직 구조를 반영하여 「도청의궤」와 「각방의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의궤는 해당 부서의 업무 관련 문서들을 유형별로 정리한 일종의 문서철이다. 따라서 당시 가례에 소용된 인원, 물품 등의 항목과 수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각 부서에서는 업무를 완료한 뒤 독자적으로 『초등록(草謄錄)』을 제작하였고, 의궤청(儀軌廳)에서는 각 부서의 초등록을 수합하여 의궤를 편찬 간행하였다. 현전하는 『왕세자가례등록』은 예조에서 제작한 등록으로서 가례도감에서 편찬한 등록과는 그 목적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 당시 의궤는 총 7건을 제작하였는데, 규장각과 시강원에 보관하는 용도와 예조·정축산성·오대산·태백산·적상산성에 보관하는 용도로 구분하였다. 시강원 건은 왕세자를 위한 의궤로서, 고종 때에만 제작되었다.

要語: 왕세자, 가례, 가례도감, 의궤, 발기, 등록

* 서울시립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강사(likecho@naver.com)

접수일: 2017년 8월 26일 최초심사일: 2017년 9월 12일 심사완료일: 2017년 9월 17일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ompilation process of the wedding ceremony of Crown Prince Yi Cheok (李坫: 純宗, 1874~1926) in 1882 after its contents and related documents are comparatively analyzed. This was the most magnificent wedding ceremony for a crown prince in Joseon history. And empirical analysis is possible because there are some extant records related to this felicitous event such as 58 check lists and the *Transcribed Record of the Crown Prince's Wedding Ceremony* (王世子嘉禮謄錄).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Superintendency for Royal Wedding is reflected in the *Ritual Protocol of the Superintendency for the Crown Prince's Wedding Ceremony* (王世子嘉禮都監儀軌) in that it consists of the protocol created by the supervisory agency and the one created by the three division offices. Each of these protocols is a kind of document file that outlines the procedures and results of each office's tasks, arranged by type. When each office completed the tasks it was assigned, it independently produced a "draft of transcribed records" (草謄錄), i.e., a draft of all documents related to the royal wedding arranged in chronological order, which were then collected and compiled by the Ritual Protocol Agency (儀軌廳) to use as the basis for publishing the ritual protocol of the crown prince's royal wedding. The extant *Transcribed Record of the Crown Prince's Wedding Ceremony* was produced by the Board of Rites for totally different purpose and contents than that of the Superintendency for Royal Wedding. At the time, seven copies of the ritual protocol were produced, and they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two groups: 1) a copy each to be stored at the Inner Royal Library and the Tutorial Office for the Crown Prince, and 2) a copy each to be kept by the Four History Archives at Jeongjoksan Mountain Fortress, Odaesan Mountain, Taebaeksan Mountain, and Jeoksangsan Mountain Fortress as well as a copy for the Ministry of Rites. As the ritual protocol for the crown prince, the copy stored at the Tutorial Office for the Crown Prince was produced only during the reign of King Gojong.

Key words: Crown Prince, Wedding Ceremony, Superintendency for Royal Wedding (嘉禮都監), Ritual Protocol (儀軌), Check List (件記), Transcribed Record (謄錄)

1. 서론

조선시대에는 국가 행사를 거행할 때마다 이를 주관하는 임시 관청으로 도감(都監)을 설치하였고, 도감에서는 행사가 끝난 뒤 모든 관련 기록물들을 낱자순으로 모아 ‘등록(騰錄)’을 만들고 이를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궤(儀軌)’를 만들었다. 의궤는 ‘의식(儀式)의 궤범(軌範)’이라는 뜻으로 의식의 전말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훗날의 모범으로 삼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다. 현재 의궤는 1601년(선조 34)의 『의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懿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를 비롯하여 모두 17세기 이후에 편찬된 것이 남아 있다. 소장처별로 규장각 533종 2,897책, 장서각 268종 566책, 국립중앙박물관 186종 294책, 국립고궁박물관 73종 159책, 국립문화재연구소 14종 15책 등 총 1,074종 3,931책이 조사 연구되고 있으며, 이외에 국내 57건, 해외 27건의 의궤가 확인된다.¹⁾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는 국왕이나 왕세자의 혼례를 주관하는 가례도감에서 편찬한 의궤로서 1627년(인조 5)의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를 비롯하여 총 20종이 현전한다. 그 내용은 가례도감의 관원 명단을 비롯하여 준비 과정을 기록한 각종 문서, 의식의 세부 절차, 예물을 비롯한 각종 물품의 목록, 동원된 인원의 명단과 보수 등으로 매우 구체적이다. 따라서 조선 왕실의 가례 문화를 연구하기 위한 주요 자료로서 복식사, 음식사, 미술사, 역사학, 문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았다.

가례도감의궤의 체제와 편찬 과정에 대한 연구로는 송혜립(2004)과 최은영(2009)이 대표적이다.²⁾ 송혜립은 현전하는 20종의 가례도감의궤 전체를 서지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각 가례도감의궤의 편찬 기관, 편찬과정과 분상처, 편찬 목적과 효용, 형태, 체제와 내용, 자료적 가치와 활용 등을 규명하였고, 각 의궤를 시기별로 인조·효종대(1627~1651), 현종·숙종대(1671~1718), 영조대(1727~1762), 순조·헌종·철종(1802~1851), 고종대 이후(1866~1906)로 구분하여 그 편찬 양식과 내용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가례도감의궤의 체제와 내용이 점차 확대되고 구체화되었으며, 열람과 활용이 편리한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규명하였다. 최은영은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의 편찬 과정과 기록학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영조대에 『국혼정례(國婚定例)』와 『상방정례(尙方定例)』가 제정된 이후 체제와 형식을 갖춘 최초의 의궤로서 2책으로 내용이 확충되었으며 주제별로 목차가 정립되었음을 규명하였다.

두 연구를 통해 가례도감의궤는 가례도감의 부서인 도청(都廳)과 각방(各房)에서 개별적으로 작성한 등록을 바탕으로 의궤청(儀軌廳)에서 재구성하여 편찬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여러 개의 복본을 만들되 왕이 보는 어람용은 차별화된 재질과 형태로 제작되었음이 밝혀졌다. 다만 그 편찬 과정이나 소요 물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궤는 수록 문서들을

1) 『조선왕조의궤 현황과 전망』 (국립중앙박물관, 2012), 10-181.

2) 송혜립, “朝鮮朝 嘉禮都監儀軌의 書誌學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최은영, “『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의 편찬과정과 기록학적 가치,”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9).

통해 편찬 당시의 정황을 추정할 수 있으나 상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기록물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1882년(고종 19) 2월 마지막 왕세자 이척(李适: 純宗, 1874~1926)의 혼례를 기록한 『왕세자가례도감의궤(王世子嘉禮都監儀軌)』에 주목하였다. 조선의 마지막 왕세자 가례로서 가장 성대한 규모로 치러졌으며, 영조 대의 『국혼정례』와 『상방정례』에서 규정한 가례 의식과 역대 가례도감의궤의 체재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세자가례등록(王世子嘉禮謄錄)』, 『별궁내숙설소등록(別宮內熟設所謄錄)』, 58건의 발기(件記) 등 당시 가례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자료들이 함께 전하고 있으므로 의궤의 내용과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례도감의궤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 연구로서 그 체재와 편찬 과정을 규명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먼저 가례도감의궤의 체재를 이해하기 위하여 목차별로 수록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의궤청의 소요 물자, 관련 기록물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의궤의 편찬 과정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 가례도감의궤의 체재와 내용

가례도감의궤는 가례도감의 조직 구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1882년의 왕세자가례에 관한 의궤는 상권(上卷)과 하권(下卷) 2책으로 편찬되었는데, 상권은 도청의궤(都廳儀軌), 일방의궤(一房儀軌), 하권은 이방의궤(二房儀軌), 삼방의궤(三房儀軌), 별공작의궤(別工作儀軌), 수리소의궤(修理所儀軌)로 구성되어 있다. 가례도감은 총괄부서로 도청을 두고 그 아래 실무 부서로 일방, 이방, 삼방, 별공작, 수리소를 두었는데, 각 부서의 기록들을 독자적으로 구성한 뒤 하나의 의궤로 엮은 것이다. 즉, 가례도감의궤는 가례도감의 실무를 담당한 각 부서의 역할과 업무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구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도청의궤를 비롯한 각방의궤의 기록 구조는 비슷하다. 각 부서에 소속된 관리들의 명단을 기록한 좌목(座目)과 담당 업무를 기록한 소장(所掌)을 맨 앞에 배치함으로써 각 부서의 규모와 업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주고받은 문서들 즉 전교(傳敎), 계사(啓辭), 이문(移文), 내관(來關), 예관(禮關), 품목(稟目), 감결(甘結), 수본(手本) 등을 종류별로 구분한 뒤 날짜순으로 수록하였다. 이는 가례 진행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한다. 마지막에는 공문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공장(工匠)의 명단, 반차도(班次圖), 의주(儀註)를 비롯하여 가례도감 외에 상의원(尙衣院)·사옹원(司饗院)·내자시(內資寺)·공조(工曹)에서 만든 물품들의 내역을 수록하였다.

<표 1> 가례도감의궤의 구성 체제

구성	목 차	내 용
도청의궤	座目, 舉行日記, 傳教(舉條啓辭并), 移文, 來關, 禮關, 甘結, 米布式, 賞典, 儀軌事目	가례 행사를 총괄하면서 주고받았던 각종 문서, 급료, 상전, 의궤 제작에 관한 기록
일방의궤	座目, 所掌, 稟目, 甘結, 附各差備醫女, 工匠, 班次圖, 儀註, 尙衣院, 司饗院, 內資寺	教命文, 衣襟, 函櫃床席, 屏風, 腰輿, 彩輿, 班次圖, 儀註 제작
이방의궤	座目, 所掌, 稟目, 甘結, 附儀仗差備女伶, 工匠	輦輿, 儀仗, 烏杖, 有屋輦, 輦子, 按袱 마련
삼방의궤	座目, 所掌, 稟目, 甘結, 工匠, 工曹	竹冊, 玉印, 器皿 등 제작
별공작의궤	座目, 所掌, 手本, 工匠	1~3방의 물품 진배, 잡기물 제작
수리소의궤	座目, 手本, 工匠	건물·시설·잡기물 제작과 수리

2.1 도청의궤

도청의궤(都廳儀軌)는 도청 즉 가례도감의 총괄 부서에서 주고받았던 각종 문서들이 종류별로 수록되어 있으며, 가례가 끝난 뒤에 내린 상전 내역과 의궤청의 의궤 제작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 가례의 전체 계획을 비롯하여 시행 내역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좌목(座目), 거행일기(舉行日記), 전교(傳教), 이문(移文), 내관(來關), 예관(禮關), 감결(甘結), 미포식(米布式), 상전(賞典), 의궤사목(儀軌事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목(座目)』은 가례도감의 주요 관원과 도청 소속 하급관리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총책임자인 도제조(都提調) 1인을 비롯하여 제조(提調) 3인, 도청(都廳) 2인, 낭청(郎廳) 6인, 감조관(監造官) 6인, 별공작감역관(別工作監役官) 1인, 별궁수리소감역관(別宮修理所監役官) 1인으로 주요 관원 총 20인의 이름과 임기일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도청 소속으로 녹사(錄事) 1인, 계사(計士) 1인, 서리(書吏) 11인, 서사(書寫) 2인, 고직(庫直) 2명, 사령(使令) 10명, 수직군사(守直軍士) 4명, 미포직(米布直) 2명, 포도군사(捕盜軍士) 2명까지 총 35명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관원의 임기일은 1882년(고종 19) 1월 15일 초간택날부터 2월 21일 친영·책빈례를 거행하는 날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1월 15일에 가례도감의 도제조, 제조, 낭청을 임명한 뒤 1월 18일 오시(11:30-12:30) 재간택과 같은 시각에 중추부(中樞府)에서 가례도감의 첫 모임이 있었다.³⁾ 이때 도청과 감조관을 정한 뒤 일방·이방·삼방에 각각 낭청 2인과 감조관 2인을 배치하여 감독하게 하였고, 업무 원칙을 정리한 ‘가례도감사목(嘉禮都監事目)’⁴⁾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좌목 다음에는 1월 15일 초간택부터 2월 22일 조현례까지 주요 행사의 거행 날짜, 시간, 장소

3)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卷上, 都廳儀軌, 甘結, 壬午正月十七日: 本都監會同坐起, 今十八日午時, 金虎門外中樞府朝房良中出令爲有置.

4) 『가례도감사목』에는 도감의 장소를 비롯하여 업무 분담, 인원 및 물품 조달, 인신(印信), 급료 등에 대한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卷上, 都廳儀軌, 傳教, 壬午正月十八日.).

등을 간략하게 기록한 『거행일기(舉行日記)』를 배치함으로써 가례 진행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가례의 세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고받았던 각종 문서들을 종류별로 전교, 이문, 내관, 예관, 감결 순으로 수록하였다.

『전교(傳敎)』는 가례와 관련하여 고종이 내린 명령들을 모은 것이다. 주로 해당 관원들이 아뢰는 안건에 대하여 윤허하고 시행을 분부하는 일이 많았으므로 신하들이 올리는 계사(啓辭)를 함께 수록하였다. 고종의 전교는 1881년(고종 18) 11월 15일에 왕세자의 관례와 가례를 이듬해 봄에 거행하도록 명하고, 7세~11세 처자에 대한 금혼령(禁婚令)을 내리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대부분 예조와 가례도감에서 올린 계사에 대하여 윤허하는 내용이 많다. 예조에서는 가례도감이 설치되기 전까지 삼간택의 날짜 택일을 비롯하여 간택 장소, 간택 대상 처자들이 대궐로 들어오는 문로(門路), 예비 왕세자빈이 거처할 별궁 등에 관한 일들을 도맡아서 진행하였고, 가례도감이 설치된 뒤에는 육례(六禮)의 길일시(吉日時), 의례 장소, 의례 절차를 기록한 의주, 각종 시행 세칙을 정리한 절목(節目) 등 의례 거행의 원칙을 정하는 일에 관여하였다. 따라서 예조에서 올린 계사와 단자를 통해 당시 가례의 의식 절차를 살펴볼 수 있는데, 『예관(禮關)』의 내용과 일부 중복된다.

가례도감에서는 낭청이 도제조의 뜻에 따라 계사를 올렸으므로, ‘嘉禮都監郎廳以都提調意啓曰(가례도감낭청이도제조의계왈)’로 시작하는 기록이 많다. 계사의 내용은 의례의 절차를 조정하는 예조와 달리 가례에 참여하는 인원 차출, 각종 물품 마련, 예물 수송 등 구체적인 실무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이다. 먼저 가례의 본 의식인 육례를 위하여 교명문(敎命文) 및 죽책문(竹冊文)의 제조관(製造官), 서사관(書寫官), 교명(敎命) 및 옥인(玉印) 전문서사관(篆文書寫官), 정사(正使), 부사(府使) 등을 임명하여 곧바로 제작에 착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례에 소요되는 모든 물품의 내역을 ‘가례도감거행물목별단(嘉禮都監舉行物目別單)’으로 정리하여 고종의 윤허를 받았다. 별단에는 납채(納采)·납징(納徵)·고기(告期)·책빈(冊嬪)·친영(親迎)·동뢰(同牢)·임헌초계(臨軒醮戒)·조현례(朝見禮) 순으로 주요 의식에 필요한 물품, 빙재(聘財)·별궁예물(別宮禮物)·정친예물(定親禮物)·납징예물(納徵禮物)·본방예물(本房禮物) 등 각종 예물의 내역, 세자궁의 법복(法服) 및 의대(衣襪), 빈궁의 법복 및 의대, 세자궁 및 별궁에 배치하는 이불과 각종 기명, 상궁·유모·시녀·내인·내관·별감 등이 착용하는 복식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일종의 기안문으로서 신사년 가례와 기묘년 가례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신사년 가례는 1761년(영조 37) 왕세손 시절 정조와 효의왕후 김씨의 혼례,⁵⁾ 기묘년 가례는 1819년(순조 19) 효명세자(문조)와 신정왕후 조씨의 혼례를 가리키는데, 주로 효명세자의 가례를 따르는 부분이 많다. 역대 왕세자 가례의 복식을 비교 분석한

5) 정조와 효의왕후는 1762년(영조 28) 임오년 2월에 가례를 올렸으나, 가례 준비 및 간택은 신사년 10월부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신사년 가례로 명명한 예가 많다. 1819년(순조 19) 효명세자의 가례를 기록한 『왕세자가례도감의례』에도 물품을 마련할 때 ‘영묘조 신사년’의 가례를 참조하도록 한데서도 전례를 확인할 수 있다.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19) 卷上, 都廳儀軌, 傳敎, 己卯六月初三日: 嘉禮都監郎廳, 以都提調意, 啓曰, 今此嘉禮時, 各樣物目, 一依定例所載, 別單書入, 而其中英廟朝辛巳, 或代用或減字書下者, 一一懸錄, 以備睿裁, 至於尙方物種, 自尙方稟單舉行之意, 分付何如. 傳曰, 允.

연구⁶⁾ 결과에서도 증명된 사실이다.

가례도감에서 올린 별단에 따라 1월 19일부터 본격적인 가례 준비에 돌입하였다. 각종 물품들 가운데 도감의 각방에서 새로 만들어야 할 것과 외부 부서에서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 등을 구분하여 별도의 제작을 허가받기도 하고, 돈이나 각종 예물의 수송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특히 가례의 주요 의물(儀物)인 ‘교명’, ‘죽책’, ‘옥인’의 제작은 초안부터 내입(內入)까지 일일이 보고하였다. 예조에서 마련한 의주를 격식에 맞는 형태로 제작하여 점검받는 일도 가례도감의 몫이었다. 고종과 왕세자에게는 모든 의주를 1통씩 올렸고, 왕세자빈·중궁전·왕대비전·대왕대비전에는 참여하는 의례에 한하여 의주를 올리되 한글본을 별도로 제작하여 한문본과 함께 올렸다.⁷⁾ 각 방의 공역이 완료되는 2월 17일을 기점으로 더 이상 계사는 없다. 전교도 2월 19일에 왕세자빈이 이극문(貳極門)을 통해 대궐로 들어오도록 명하는 데서 끝난다.

「이문(移文)」과 「내관(來關)」은 가례도감과 다른 관청이 주고받은 문서를 모은 것이다. 모두 동등 이하의 관청에 발급하는 관문(關文) 형식의 문서이다. 이문은 가례도감에서 발급한 협조 요청 문서이고, 내관은 가례도감이 받은 회신 문서이므로 두 종의 문서를 날짜별로 맞춰보면 협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동퇴연에 쓰는 교배석(交拜席)을 마련하기 위해 황해감영을 거쳐 배천군수에게 협조를 구한 일, 납채 및 친영례 때 쓰는 기러기 2마리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감영에 협조를 구한 일, 교명문을 짓는 제술관과 교명·죽책·옥인의 전문(篆文)을 쓰는 서사관의 임명 사실을 의정부·중추부·수원부에 알린 일, 가례도감 소속 인원들의 급료 지급을 위해 호조 및 병조에 협조를 구한 일, 이조에서 첩보(牒報)로 육례를 담당하는 차비관(差備官)의 명단을 보내온 일, 병조에서 첩보로 왕세자빈을 배위(陪衛)하는 일의 절목(節目)을 보내온 일, 가례가 끝난 뒤 2월 28일에 가례도감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을 호조로 수송한 일, 가례에 소용된 각종 물자들의 수량을 기록한 실입질(實入秩)과 다시 돌려주는 물품의 내역을 기록한 용환질(用還秩)을 정리하여 병조에 보낸 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예관(禮關)」은 예조에서 올린 계사 및 단자와 이에 대한 왕의 승인 즉 계하(啓下) 내용을 모은 것이다. 가례도감이 설치되기 전까지 예조에서 가례를 준비하였으므로, 금혼령의 제외 대상 조건을 비롯하여 간택단자 수합, 간택 일시, 간택 및 별궁 장소 마련 등 간택까지의 제반 사항에 관한 논의가 기록되어 있다. 가례도감 설치 이후에는 육례 일시 및 장소, 의주, 습의 규칙, 인장의 규칙 등을 의논하였다. 이 때 세자빈의 옥인(玉印)에는 ‘왕세자빈지인(王世子嬪之印)’을 새기게 하고, 교명문(敎命文)에는 종래의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아니라 ‘조선왕보(朝鮮王寶)’를 안보하도록 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일부 내용은 「전교」에 중복 수록되어 있다.

6) 안애영, “임오(1882)년 가례 왕세자·왕세자빈 복식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0), 28-85.

7)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19) 卷上, 都廳儀軌, 傳教, 壬午二月初九日: 嘉禮都監郎廳, 以都提調意, 啓曰, 今此王世子嘉禮時, 各樣儀註九度, 謹此書入, 而世子宮亦爲書入, 朝見禮儀註, 眞諺書各一度, 書入于大王大妃殿·王大妃殿·中宮殿, 嬪受冊等儀註, 眞諺書各七度, 書入于別宮之意, 敢啓. 傳曰知道.

『감결(甘結)』은 도청에서 가례도감 외부의 하급 관청에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문서를 모은 것이다. 수신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가례도감 설치 초기에는 서리, 서사, 고직, 사령 등 필요 인원을 차출하거나 각종 물자들을 마련하는 일에 관한 내용이 많다. 이 때 도청의 문서 작성을 위한 물자로, 백휴지(白休紙), 백지(白紙), 저주지(楮注紙), 황필(黃筆), 진묵(眞墨), 자연(紫硯), 지대차(紙岱次) 후유지(厚油紙), 등록가의차(騰錄假衣次) 감시낙폭지(監試落幅紙) 등의 마련을 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도청의 문서 생산량과 별도의 등록 제작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미포식(米布式)』은 호조 등에서 지원받은 비용, 하급관리에 대한 급료, 장인의 보조 인원 내역 등을 기록한 것이다. 호조·병조·장어영에서 받은 쌀·무명·돈의 내역인 미목전취래질(米木錢取來秩), 도감의 별간역·녹사·계사·서리 등에게 급료로 지불한 내역인 요포상하식(料布上下式), 여러 장인에게 붙여준 보조자의 수를 기록한 공장조역식(工匠助役式)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시로 차출된 인원에 대한 비용을 기록한 것으로 호조 등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상전(賞典)』은 가례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각자의 품계와 참여도에 따라 차등 시상하기 위하여 주요 의례별로 참여 인원의 명단을 열거한 뒤 해당 상전을 기록하였다. 가례도감의 도제조 이하 차비관, 납채·납징·고기·책례에 참여한 각 차비관 등을 직책 순으로 열거하였다. 직책이 높은 이들에게는 안구마(鞍具馬)·숙마(熟馬)·반숙마(半熟馬)·아마(兒馬) 등의 마필(馬匹)을 하사하였고, 그 아래의 관원들에게는 가자(加資)·승서(陞敍) 등과 같이 품계나 직책을 올려주었다.

『의궤사목(儀軌事目)』은 의궤를 제작하는 임시 관청인 의궤청(儀軌廳)의 규정과 각종 소용 물품들을 기록한 부분이다. 사목(事目)에는 의궤청의 장소, 소속 관원, 의궤 제작 건수 및 분상처, 인원 차출 및 급료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의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자들을 조달하기 위하여 가례도감 외부의 하급 관청에 보낸 감결(甘結)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궤의 편찬 과정과 관계된 것이므로, 3장 1절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2.2 각방의궤

도청 아래의 하위 부서는 일방, 이방, 삼방, 별공작, 수리소가 있으며, 각 부서의 기록은 별도의 의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방의 의궤는 해당 소속 관원의 명단을 기록한 ‘좌목(座目)’과 담당 업무를 간략하게 명시한 ‘소장(所掌)’이 맨 앞에 나오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각종 문서 등을 수록하였다.

『일방의궤(一房儀軌)』는 좌목, 소장, 품목, 감결, 각차비의녀, 공장, 반차도, 의주, 상의원, 내옹원, 내자시 순으로 담당 업무에 관한 기록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좌목에 따르면 낭청·감조관 각 2인, 계사 1인, 서리 9인, 서원(書員) 2인, 고직 1명, 사령 6명, 수직군사·대령포교(待令捕校) 각 2명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주요 담당 업무는 교명, 의대, 함·궤·상·석(函櫃床席),

명풍(屏風), 요여(腰輿), 채여(彩輿), 반차도(班次圖), 의주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명문의 전문⁸⁾과 도식(圖式)을 비롯하여 육례의 일시와 각종 소용 물품들의 목록을 하나하나 자세히 열거하였다.

그리고 일방에서 상급 부서인 도청에 협조를 구하거나 보고하기 위하여 올린 ‘품목(稟目)’과 그 회신으로 받은 ‘감결(甘結)’을 각각 날짜별로 수록하였다. 먼저 일방에서는 해방 낭청 및 감조관이 필요한 물품, 서리 및 서원이 문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비롯하여 교명·복식·기러기·반차도 등 일방에서 마련해야 하는 각종 물품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도청에서 해당 관서에 감결을 발급하여 협조를 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품목을 올렸다. 그리고 도청에서는 습의(習儀) 및 육례 거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지시하는 감결을 발급하였는데, 주로 물품 및 인원을 대령하는 일에 관한 것이 많다.

품목의 내용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서리 및 서원이 문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물품의 내역이다. 일방의 문서는 곧 의례의 수록 대상 자료이므로, 그 소용 물품은 의례의 편찬 재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방에서는 1월 19일부터 2월 17일까지 여러 차례 품목을 올려서 종이, 붓, 먹 등을 마련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백휴지(白休紙) 30근, 황필(黃筆) 25자루, 참먹[眞墨] 13정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업무를 완료한 뒤 관련 자료들을 모두 수합하여 ‘초등록(草騰錄)’으로 작성하였는데, 이를 수정하는 데 사용되는 각종 종이, 붓, 먹 등도 요청하였다. 3월 15일 품목에서는 일방에서 사용한 물품의 내역을 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사용한 실입결과 다시 돌려주는 용환질로 구분하여 열거하였는데, 여기에서 종이 등의 물품 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각차비의녀질(各差備醫女秩)’과 ‘공장(工匠)’에서는 가례에 동원된 의녀의 인원수와 장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의녀들은 빈수책례(嬪受冊禮) 때 부모차비(傅姆差備) 등 42명, 친영례 때 수칙차비(守則差備) 등 34명, 동퇴연 때 수칙차비 등 30명, 조현례 때 상궁차비(尙宮差備) 등 51명으로 총 157명의 각 직무가 명시되어 있다. 공장은 화원(畫員), 화사(畫師), 사자관(寫字官), 책장(冊匠) 등 134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다. 일방에서 담당하는 직무나 마련하는 물품의 규모가 다른 곳에 비해 워낙 방대하고 그 중요도가 높은 탓에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차도(班次圖)’는 왕세자가 별궁에 가서 왕세자빈을 창덕궁까지 직접 모셔오는 친영례의 행렬 모습을 담고 있다.

‘의주(儀註)’는 진담부서 의주소(儀註所)의 품목과 납채(納采) 등 주요 의례의 절차를 상세하게 기록한 의주를 모은 것이다. 의주소에서는 의주와 이를 간략하게 줄인 휴대용 홀기(笏記)를 제작하는 데 소용되는 물품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청에 품목을 올렸다. 이에 따라 한문본과 한글본으로 제작된 의주 및 홀기의 수량과 재료를 확인할 수 있다. 왕세자 등에게 올리는 것은 상품도련지(上品搗鍊紙), 신하 및 여관들에게 주는 것은 초주지(草注紙)와 저주지(楮注紙)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용도에 따라 재료가 다르다.⁹⁾ 의주는 왕세자가례시납채의(王世子嘉禮時納采儀), 빈씨가수납채의

8) 교명문의 제술관(製述官)은 의정부영의정 서당보(徐堂輔), 서사관(書寫官)은 검예조관서 민겸호(閔謙鎬)이며, 교명 2차 전문(篆文) 서사관은 관중주부사 한계원(韓啓源)이 맡았다(『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卷上, 一房儀軌, 敎命文).

(嬪氏家受納采儀), 남징의(納徵儀), 빈씨가수남징의(嬪氏家受納徵儀), 고기의(告期儀), 빈씨가수고기의(嬪氏家受告期儀), 교명책인예궐내입의(敎命冊印詣闕內入儀), 교명책인내출의(敎命冊印內出儀), 책빈의(冊嬪儀), 빈수책의(嬪受冊儀), 임헌초계의(臨軒醮戒儀), 왕세자친영의(王世子親迎儀), 왕세자친영후빈예궐의(王世子親迎後嬪詣闕儀), 동뢰의(同牢儀), 가례후빈조현의(嘉禮後嬪朝見儀), 가례후빈조현대왕대비전의(嘉禮後嬪朝見大王大妃殿儀), 가례후빈조현왕대비전(嘉禮後嬪朝見王大妃殿儀), 외선온의(外宣醮儀) 18건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상의원(尙衣院)’, ‘사옹원(司饗院)’, ‘내자시(內資寺)’에서 마련한 물품의 내역이 열거되어 있다. 모두 『도청의궤』에 수록된 ‘가례도감거행물목별단’에 의거하여 실제로 마련한 물품의 내역이므로, 현전하는 발기의 내용과 비교해 볼 만하다.

『이방의궤(二房儀軌)』는 좌목, 소장, 품목, 감결, 의장차비여령질,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목에 따르면 낭청·감조관 각 2인, 계사 1인, 서리 5인, 서원 2인, 고직 1명, 사령 5명, 수직군사·연여수직군사(輦輿守直軍士)·포도군사 각 2명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업무는 연여(輦輿) 1좌, 의장(儀仗) 12명, 오장(烏杖) 10개, 유옥교(有屋轎) 1좌, 교자(轎子) 1좌, 안보(按袱) 2쌍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방의 문서 또한 도청에 올린 ‘품목’과 그 회신인 ‘감결’이 있다. 주로 삼간택 후 별궁으로 갈 때 왕세자빈이 타는 유옥교, 별궁에서 창덕궁으로 들어갈 때 왕세자빈이 타는 연여, 각종 의장 등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물자와 이를 전달하는 가마꾼, 의장차비, 의장군 등의 인원 차출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다. 이방에서 문서 작성 용도로 요청한 물품은 백휴지 5근, 공사백지(公事白紙) 2권, 황필 7자루, 백필(白筆) 1자루, 참먹 등이다. 그리고 ‘초등록’을 수정하기 위한 용도로 별도의 백휴지, 후백지, 백지, 황필, 참먹 등을 요청하였다. 이 또한 2월 20일 품목으로 보고한 이방의 사용 물자 내역인 실입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장차비여령질(儀仗差備女伶秩)’은 수책례, 친영례, 동뢰연, 조현례를 거행할 때 배열하는 의장(儀仗)의 담당 여령 수를 기록한 것이다. 이 때 여령이 부족하여 형조의 비자(婢子) 68명을 충원하였고, 그들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공장’에는 이방에 동원된 화원, 소목장(小木匠) 등 총 67명의 장인 명단이 열거되어 있다.

『삼방의궤(三房儀軌)』는 좌목, 소장, 품목, 감결, 공장, 공조로 구성되어 있다. 좌목에 따르면 낭청·감조관 각 2인, 계사 1인, 서리 5인, 서원 2인, 고직 1명, 사령 5명, 수직군사·잡물직(雜物直)·포도군사 각 2명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업무는 죽책(竹冊), 옥인(玉印), 각종 기명(器皿)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죽책문의 전문¹⁰⁾과 도식, 옥인의 형상, 동뢰연배설도, 각종 기명의 명칭과

9)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卷上, 一房儀軌, 儀註.

의주 및 홀기에 들어간 물자와 관련된 문서들은 연도가 모두 ‘己卯年’으로 되어 있으나, 정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의 가례 일정은 임오년 가례와 일치하므로 誤記로 보아야 한다. 기묘년 즉 1819년 효명세자의 가례는 10월에 거행되었으므로 그 전례를 기록한 것이라 볼 수 없다.

10) 죽책문의 제출관은 행태호군 김상현(金尙鉉), 서사관은 행수원부유수 정기세(鄭基世)이며, 옥인전문(玉印篆文) 서사관은 영중추부사 홍순목(洪淳穆)이 맡았다(『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卷上, 二房儀軌, 竹冊文).

수량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삼방의 문서도 도청에 올린 ‘품목’과 그 회신인 ‘감결’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죽책과 옥인의 제작 형식을 논의하고, 그 재료의 종류와 수량 등을 열거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세자궁, 별궁, 동퇴연 등에 진열하는 기명들의 종류와 수량이 하나하나 열거한 뒤 해당 부서에서 만들어 대령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삼방의 서리 및 서원은 문서를 작성하는 용도로 백휴지, 황필, 참떡 등을 사용하였고, ‘초의궤(草儀軌)’를 수정하는 용도로는 백지, 저주지, 백휴지, 황필, 참떡 등이 필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방과 이방의 품목에서는 ‘초등록’을 위한 물품 요청이 있었던 데 반하여 삼방의 감결에서는 ‘초의궤’라고 명시한 점이 흥미롭다. 역대 『왕세자가례도감의궤』에서는 모두 ‘초등록’이라 하였으므로,¹¹⁾ 혼동으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삼방에 동원된 ‘공장’은 사자관, 화원, 각수, 옥각수, 옥장 등 총 113명에 이르며, 그들의 이름을 모두 열거하였다. ‘공조(工曹)’에는 동마요(銅馬要), 동북선(銅北簾), 병당자(柄鎗子), 칭자(稱子), 유대야(鋤大也) 등 공조에서 제작하는 각종 철물들의 명칭과 수량을 기록하였다.

『별공작의궤(別工作儀軌)』는 좌목, 소장, 수본,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목에 따르면 감역관(監役官) 1인, 계사 1인, 서원 2인, 고직 1명, 사령 2명, 수직군사 2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삼방을 보조하여 각종 기명을 만들거나 일방·이방·삼방에서 만든 기물들을 배치하는 일을 맡았다.

별공작에서는 도청에 수본(手本) 형식의 문서를 올렸다. 일방·이방·삼방을 보조하는 하위 부서이므로, 문서의 격식 또한 품목보다 낮은 것으로 하였다. 수본에는 주로 별공작에서 만들거나 배열하는 물품들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거나 필요한 물자들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다. 이 때 문서를 작성하는 용도로 백휴지, 황필, 참떡 등을 먼저 요청하였고, ‘초등록’의 작성을 위하여 후백지, 황필, 참떡 등을 추가로 요청하였다. 이 또한 별공작의 실입질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별공작에 동원된 공장의 명단이 열거되어 있는데, 목수·진칠장(眞漆匠)·가칠장(假漆匠) 2명 등 총 46명의 직명과 이름이 보인다.

『수리소의궤(修理所儀軌)』는 좌목, 수본,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목에 따르면 감역관 1인, 계사 4인, 서원 2인, 고직 1명, 사령 2명, 수직군사 2명, 포도군사 2명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업무는 별궁을 비롯한 건물과 시설들을 수리하는 일을 주로 맡았으나, 각종 궤(櫃)나 탁자 등의 기물을 만드는 것이었다. 도청에 올린 수본에는 필요한 물자들을 요청하거나, 배열하는 기명들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이 많다. 이 때 서원이 문서를 작성하는 용도로 백휴지, 백필, 참떡을 요청하였으며, ‘초등록’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곳에 소속된 공장들은 목수, 야장(冶匠), 박배장(朴排匠) 등 총 18명이다.

도청의궤와 각방의궤를 살펴본 결과, 각 부서에서 역할을 나누어 업무를 처리하면서 독자적으로 담당 문서들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초등록’을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부서별로 정리한 초등록을 바탕으로 의궤를 편찬한 것이다.

11) 현전하는 가례도감의궤 가운데 ‘초의궤’의 용어를 쓴 것은 1851년(철종 2) 『가례도감의궤』, 1882년(고종 19) 『왕세자가례도감의궤』, 1906년 『황태자가례도감의궤』 3책뿐이다.

3. 가례도감의제의 편찬 과정

3.1 의궤청의 설치와 물자 마련

가례의 모든 절차가 끝나면 의궤 편찬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로 의궤청(儀軌廳)을 설치하고, 관련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궤를 편찬한다. 의궤청은 대체로 가례도감과 동일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¹²⁾ 1882년(고종 19)에는 가례도감을 예조·중추부·이조에 두었고, 의궤청은 예조 소속의 전의감(典醫監)에 설치하였으므로, 업무의 편의성에 따라 가례도감과 유관한 장소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궤청의 관원들 또한 가례도감 관원들 가운데서 선발하였다. 이들이 가례 전반의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의궤를 편찬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의궤청은 2월 21일 친영례 및 동퇴연, 22일 교서 반포와 조현례 거행이 끝난 지 일주일 뒤 2월 29일에 설치되었다. 이 때 의궤청의 주요 규칙을 정리한 「의궤사목(儀軌事目)」을 작성하고, 소용 물품들을 마련하면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의궤사목」에는 의궤청의 장소, 소속 관원의 구성, 의궤의 제작 수량 및 종이 품질 등 기본적인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의궤청에는 가례도감의 도제조, 제조, 도청을 그대로 임명하였고, 낭청은 6인 가운데 1인만 차출하였다. 또 사자관 2인, 화원 1인, 서리 3인, 서사 5인, 고직 1명, 사령 2명, 수직군사 2명, 다모 1명이 추가로 명시되어 있는데,¹³⁾ 의궤청의 상진 내역을 보면 인출장(印出匠) 1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업무를 위해서는 의궤의 초본 작성을 위한 백휴지(白休紙) 10근을 비롯하여 온돌, 빨감, 화로, 석탄, 등유 등 난방 용품과 병풍, 흙화로, 벼루, 서판(書板), 서안(書案), 전판(剪板) 등을 배정하였다.¹⁴⁾

<표 2> 의궤청의 구성 인원

직책	해당 관원	이력
도제조	의정부좌의정 송근수	가례도감 도제조
제조	검예조판서 민경호, 행호조판서 김병시, 공조판서 정범조	가례도감 제조
도청	부사과 김영덕, 시강원필선 홍승헌	가례도감 도청
낭청	호조정랑 이수은	가례도감 낭청
기타	寫字官 2인, 畫員 1인, 書吏 3인, 書寫 5인, 庫直 1명, 使令 2명, 印出匠 1명, 守直軍士 2명, 茶母 1명, 印出匠 1명	

12) 김문식, “儀軌事目에 나타나는 의궤의 제작 과정,” 『奎章閣』 第37輯(2010), 160-161.

13)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卷上, 都廳儀軌, 儀軌事目.

14)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卷上, 都廳儀軌, 儀軌事目, 甘結, 壬午二月二十九日.

의례청의 관원들이 가례 당시의 각종 기록물들을 수합하여 『왕세자가례도감의궤』로 편찬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가례도감의 각 부서에서 요청한 각종 물품 내역을 통해 모든 업무가 완료된 뒤 기록들을 수합하여 정리한 ‘초등록(草謄錄)’을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례를 편찬한 사실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도청에서는 1월 16일 도감의 설치와 함께 문서 작성을 위한 각종 물자들을 마련하였는데, 백휴지 3근, 백지 2권, 저주지 1권, 황필 5자루, 참떡 3정, 벼루 3면 갑구(匣具), 전판(剪板) 2부, 서판(書板) 2개, 지대차(紙倍次) 후유지(厚油紙) 1장, 등록가의차(謄錄假衣次) 감시낙폭지(監試落幅紙) 1도, 유사(柳筍) 1부, 궤자구쇄약(櫃子具鎖鑰) 1부, 교말(膠末) 1되를 요청하였다.¹⁵⁾ 도청에서 초등록을 제작한 기록은 없으나, ‘감시낙폭지’ 즉 과거 시험에 불합격한 시험지를 등록의 표지로 재활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방에서는 1월 19일에 업무를 시작하면서 문서 작성을 위한 물자로 백휴지 2근, 황필 3자루, 참떡 2정, 유오(柳箕) 1부, 벼루 2면 갑구, 지대차 후유지 1장, 교말 1되, 서판·전판 각 2개, 공장패(工匠牌) 1립, 목두(木斗)·목승(木升) 각 1개, 명석 1립, 등록가의차 감시낙폭지 1도, 목광명대(木光明臺) 1좌 등잔구(燈盞具), 보통보시기[常甫兒] 2개, 질동이[陶東海]·소라(所羅) 각 1개를 요청하였다. 이후 물자 부족으로 5차례에 걸쳐 백휴지 28근, 황필 22자루, 참떡 11장을 추가로 더 요청하였다.¹⁶⁾ 그리고 2월 15일에 모든 업무를 완료한 뒤 초등록의 수정 작업에 필요한 각종 물자들을 별도로 요청하였다. 초본을 작성하는 용도로 백휴지 2근, 실제 문서의 정서하는 용도로 백지 2권, 초등록을 위한 용도로 후백지(厚白紙) 4권, 황필 4자루, 참떡 2정 등을 요청하였고, 등록을 수정하는 기간 동안 서리·서원·고직·사령·수직군사는 일방에 머물며 일하도록 하였다.¹⁷⁾ 이방 또한 1월 19일 업무의 첫 시작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용도로 사용할 각종 물자들을 요청하였다. 백휴지 2근, 공사백지 1권, 황필 3자루, 참떡 2정, 벼루 2면, 지대차 후유지 1장, 교말 1되, 토화로(土火爐) 2좌, 미추(尾箒) 1자루, 등록가의차 감시낙폭지 1장, 문서 담는 유사(柳筍) 1부 등이다. 그리고 사흘 뒤 부족한 물자를 보충하기 위하여 백휴지 3근, 공사백휴지 1권, 황필 4자루, 백필 1자루, 참떡 2정을 추가로 요청하였다.¹⁸⁾ 2월 15일 모든 업무를 완료한 뒤에는 초등록을 수정하기 위한 용도로 백휴지 2근, 정서 용도로 후백지 2권, 백지 1권, 황필 3자루, 참떡 3정, 교말(膠末) 1되를 요청하였다.¹⁹⁾

15)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卷上, 都廳儀軌, 甘結, 壬午正月十六日.

16)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卷上, 一房儀軌, 稟目, 壬午正月二十九日; 二月初三日; 二月初十日; 二月十五日; 二月十七日.

17)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卷上, 一房儀軌, 稟目, 壬午二月十五日: **本房草謄錄修正時, 出草次白休紙二斤, 實入文書正書次白紙二卷, 草謄錄次厚白紙四卷·黃筆四柄·眞墨二丁·點火燒木·爐炭**, 依例進排爲跡, 書吏·書員·庫直·使令·守直軍士, 限草謄錄修正間, 仍留使役事, 捧甘何如.

18)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卷下, 二房儀軌, 稟目, 壬午正月十九日; 正月二十二日.

19)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卷下, 二房儀軌, 稟目, 壬午二月十五日: **本房草謄錄, 修正次白休紙二斤, 正書次厚白紙二卷·白紙一卷·黃筆三柄·眞黑三丁·膠末一升**進排爲跡, 書吏·庫直·使令及守直軍士·捕盜軍士各二名, 文書修正間, 仍定使役事, 捧甘何如.

삼방에서는 서리 및 서원이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도로 황필 1자루, 참먹 1정, 백휴지 2근, 벼루 3면, 유기(柳箕) 2부, 교말 5홉, 서판 1개, 궤자 2부 등을 요청하는 품목을 올렸다.²⁰⁾ 그리고 ‘초의궤’를 수정하는 용도로 백지 2권, 저주지 5장, 백휴지 2근, 황필 5자루, 참먹 2정을 사용하였다.²¹⁾ 여기서의 ‘초의궤’는 ‘초등록’과 혼동하여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별공작에서는 문서 작성 용도로 백휴지 8냥, 황필 1자루, 참먹 1정, 유오(柳箕) 1부 등을 요청하였고,²²⁾ 초등록을 위해서는 후백지 1권, 황필 1자루, 참먹 1개, 실제 문서 작성을 위한 백휴지 1근을 추가로 요청하였다.²³⁾ 그리고 수리소에서는 서원이 작성하는 문서 용도로 백휴지 5근, 백필 2자루, 참먹 2정, 벼루 1면, 유오 1부 등을 요청하였으며,²⁴⁾ 초등록의 제작에 대한 기록은 없다.

각 부서의 업무량에 따라 문서 작성량과 그 소요 물품의 규모가 비례함을 알 수 있다. 또 일반적인 문서를 작성할 때는 백휴지를 사용하였으며, 초등록의 본문은 후백지, 표지는 감시낙지를 사용하여 용도에 따라 종이의 품질을 달리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기록을 종합하여 가례도감에서 문서 및 초등록을 제작하는 데 소요한 각종 물품의 내역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가례도감의 문서 및 초등록 제작을 위한 각종 물품

	문서 소용	초등록 소용
도청	白休紙3斤, 白紙2卷, 楮注紙1卷, 黃筆5柄, 眞墨3丁, 紫硯3面匣具, 剪板2部, 書板2箇, 紙倍次厚油紙1張, 臚錄假衣次監落1度, 柳筭1部橫子具, 鎖鑰1部, 膠末1升	
일방	白休紙30斤, 黃筆25柄, 眞墨13丁, 柳箕1部, 紫硯2面匣具, 紙倍次厚油紙1張, 膠末1升, 書板·剪板各2箇, 工匠牌1立, 木斗升各1箇, 網席1立, 臚錄假衣次監試落幅紙1度, 木光明臺1坐燈盞具, 常甫兒2箇, 陶東海所羅各1箇	草臚錄修正時 出草次白休紙2斤, 實入文書正書次白紙2卷, 草臚錄次厚白紙4卷, 黃筆4柄, 眞墨2丁
이방	白休紙5斤, 公事白紙1卷, 公事白休紙1卷, 黃筆7柄, 白筆1柄, 眞墨4丁, 紫硯2面, 紙倍次厚油紙1張, 膠末1升, 土火爐2坐, 尾箒1柄, 臚錄假衣監落1張, 文書入盛柳筭1部	草臚錄修正次 白休紙2斤, 正書次厚白紙2卷, 白紙1卷, 黃筆3柄, 眞黑3丁, 膠末1升
삼방	白休紙2斤, 黃筆1柄, 眞墨1丁, 紫硯3面, 柳箕2部, 膠末5合, 書板1箇, 橫子2部	草儀軌修正次 白休紙2斤, 白紙2卷, 楮注紙5張, 黃筆5柄, 眞墨2丁
별공작	白休紙8兩, 黃筆1柄, 直墨1丁, 柳箕1部	草臚錄次 厚白紙1卷, 黃筆1柄, 眞墨1丁, 實入文書所用白休紙1斤
수리소	白休紙5斤, 白筆·眞墨各2丁, 紫硯1面, 柳箕1部	

20)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卷下, 三房儀軌, 稟目, 壬午二月二十日.

21)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卷下, 三房儀軌, 甘結, 壬午二月二十日: **本房草儀軌修正次, 黃筆五柄·眞墨二丁·白紙二卷·楮注紙五張·白休紙二斤**進排事.

22)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卷下, 別工作儀軌, 手本, 壬午二月二十九日.

23)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卷下, 別工作儀軌, 手本, 壬午正月二十九日: **本所草臚錄次, 厚白紙一卷·黃筆一柄·眞墨一丁, 實入文書所用白休紙一斤**, 依例進排事, 捧甘爲只爲.

24)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卷下, 修理所儀軌, 手本, 壬午正月二十五日.

가례도감의 도청에서는 감결로 각 방에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각 방에서는 업무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보고나 요청 사항들을 품목이나 수분으로 도청에 올렸다. 그리고 가례 일정에 맞춰 모든 업무가 완료되고 나면 그동안 주고받은 여러 문서들을 모아서 초등록으로 제작하였다. 각 부서의 초등록은 일반적인 등록과 마찬가지로 날짜별로 각종 문서들을 모아서 기록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날짜별로 기록된 초등록은 의례의 체제와 다르므로, 의례청에서는 각종 문서들을 종류별로 다시 분류·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했다. 그리고 각 부서의 독자적인 의례로 구성하여 해당 관원의 명단을 기록한 ‘좌목’과 업무를 기록한 ‘소장’을 앞에 두고 해당 부서의 문서들을 종류별로 수록하였다. 이와 같은 문서철 뒤에는 각 부서의 업무상 특성에 맞추어 도청에는 미포식·상전·의궤사목, 일방에는 각차비의녀질·공장·반차도·의주·상의원·사용원·내자시, 이방에는 의장차비여령질·공장, 삼방에는 공장·공조, 별공작과 수리소에는 공장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이와 같이 의례의 내용 구성이 끝나면 보관처에 따라 형태가 다른 의례들을 제작하였다. 이를 위한 각종 물품들은 의례청이 설치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1883년(고종 20) 8월 10일에 요청되었다. 가례도감의례는 총 7건을 제작하였으며, 각각 규장각(奎章閣), 시강원(侍講院), 예조(禮曹), 정족산성(鼎足山城), 오대산(五臺山), 태백산(太白山), 적상산성(赤裳山城)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규장각 건은 고종, 시강원 건은 왕세자가 보는 용도로 만들었으므로, 예조 등 각처에 나누어 보관하는 분상건(分上件)과는 차별화된 재료를 사용하였다. 규장각 및 시강원 건은 초주지(草注紙), 분상건은 저주지(楮注紙)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출할 때 규장각 및 시강원 건에만 당주홍(唐朱紅)과 편연지(片臙脂)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내지(內紙)의 인찰선(印札線)을 그리는 용도로 쓰게 할 것이다. 실제 분상건은 인찰선을 검은 먹으로 그려서 시각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표지를 꾸미는 장황(粧纈)은, 규장각 및 시강원 건의 경우 초록화화주(草綠禾花紬)에 백릉(白綾)과 홍화화주(紅禾花紬)로 제목을 쓰는 부분을 별도로 만들게 하였고, 분상건은 홍염포(紅染布)만 써서 그 위에 먹으로 제목을 쓰게 하였다. 책을 묶는 장정(裝幀) 또한 규장각 및 시강원 건은 숙동(熟銅)과 함석(含錫), 분상건은 편철(編鐵)을 사용하였다.²⁵⁾

이와 같은 과정으로 제작된 의례의 형태와 소용 물품 등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각 공정에 소용된 물품의 종류는 감결의 내용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수량은 실입질을 참조하여 조정하였다.

25)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卷上, 都廳儀軌, 儀軌事目, 甘結, 癸未八月初十日: 本都監 儀軌修正時, **奎章閣件·侍講院件**草注紙三十卷, **分上件**楮注紙七十卷·白紙三十卷, 黃筆五十柄·眞墨二同·膠末五升·印出常墨八兩·黃蜜三兩, **奎章閣件侍講院件印出所入**, 唐朱紅十六兩·片臙脂十片, **班次圖所入**, 三碌四兩·石礪朱四兩·荷葉二兩·三青一兩·石碌一兩·同黃二兩·青花八兩·眞粉五兩·石紫黃二兩·阿膠十五兩二錢·白礬二兩·畫水筆各伍柄進排事. 同日. **本都監儀軌修正所用**, 白休紙十斤·膠末參升, **奎章閣件·侍講院件粧纈所入**, 草綠禾花紬九尺六寸·題目次白綾長七寸廣一寸四片·紅袂次紅禾花紬長七寸廣一寸二片·後襟青染紙二張·楮注紙一卷捌張·熟銅四斤·含錫二斤·汗音銀二錢·礪砂砒霜各一錢二分·三甫一月乃·豆錫匠所用炭二斗, **分上件粧纈所入**, 紅染布二十兩·尺編鐵二十箇 中圓環排具十箇·三寸道乃頭釘二十箇進排事.

<표 4> 의궤의 형태와 소용 물품

	규장각·시강원건	분상건
도판		
종이	上品草注紙 28권	楮注紙 70권14장, 白紙 30권
인출	唐朱紅 16兩, 片臘脂 10片	
장황	草綠禾花紬 9자6치 題目次 白綾 길이7치너비1치 4편 紅袂次 紅禾花紬 길이7치너비1치 2편 後襟 靑染紙 2장, 楮注紙 1권8장	紅染布 20냥자
장정	熟銅 4근, 含錫 2근, 汗音銀 2전, 礪砂·砒霜 각 1전2푼, 三甫 1다라	編鐵 20개, 中圓環排具 10개, 三寸道乃頭釘 20개
진상	紅紬四幅襟 2件, 紅假函 2隻	
반차도	三礫 4냥, 石礪朱 4냥, 荷葉 2냥, 三靑 1냥, 石礫 1냥, 同黃 2냥, 靑花 8냥, 眞粉 5냥, 石紫黃 2냥, 阿膠 15냥2전, 白礬2냥, 畫水筆 각 5병	
공통	白休紙 10근, 黃筆 50자루, 眞墨 2동, 膠末 8되, 印出常墨 8냥, 黃蜜 3냥	

이와 같이 왕세자를 위해 별도의 의궤를 만들어 시강원에 보관하게 한 것은 1882년(고종 19) 왕세자 가례와 1906년(광무 10) 황태자 가례의 경우가 유일하다. 왕이 보는 어람용 의궤 1건을 만들어 규장각에 보관하는 것이 전례였으나, 고종은 왕세자 이척(훗날의 순종)을 위하여 어람용과 동일한 형태의 의궤를 특별히 만들게 했던 것이다. 당시 제작한 『왕세자가례도감의궤』는 7건 모두 현전하는데,²⁶⁾ 규장각과 시강원에 보관하는 용도로 만든 의궤 2건은 형태가 완전히 동일하여 어느 것이 어람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의궤 제작을 위한 물품을 요청한 지 또다시 8개월이 흘렀다. 1884년(고종 21) 4월 1일에 의궤를 도침(擣砮)하는 데 필요한 물품과 인원을 마련하고, 규장각 및 시강원에 보관하는 의궤를 진상할 때 사용하는 보자기와 함(函)을 배정하였다. 또 의궤 제작에 참여한 사자관, 화원, 서리, 서사 등에 대한 요포(料布) 지급을 요청하는 문서도 수록하였는데, 2년 전 1882년(고종 19) 3월 12일에 호조와

26) 규장각·시강원(규장각 奎13177, 奎13178), 예조(奎13176), 경주산성(奎13175), 오대산(奎13174), 태백산(국립고궁박물관), 적상산성(장서각 K2-2678) 분이 있다.

명조에 발급한 관문(關文)이다.²⁷⁾ 애초의 계획과 달리 의궤 제작이 지연되면서 요포의 지급 또한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언급된 사자관 2인은 규장각 및 시장원 건, 서사 5인은 분상건을 쓴 사람으로, 글씨를 쓰는 이 또한 지위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884년 12월 25일에야 의궤의 수정 및 상황까지 모두 마무리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규장각 및 시장원 건은 장책(粧冊)하여 진상하고, 예조에도 곧바로 보내어 보관하도록 하였다. 정족산성, 오대산, 태백산, 적상산성에 보관하는 책은 해당 사고(史庫)의 포쇄(曝曬) 날짜에 맞추어 보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의궤를 제작하는 데 실제로 들어간 물자의 내역은 실입질, 사용하고 난 뒤 해당 관서로 다시 돌려준 물자의 내역은 물품의 내역을 기록한 용환질로 구분하여 보고하였다.²⁸⁾

당시 가례도감의궤의 제작 기간을 계산해보면, 1882년 2월 29일 의궤청이 설치한 날로부터 1884년 12월 25일 완성을 보고한 날까지 약 2년 10개월이 걸렸다. 역대 가례도감의궤의 제작 기간을 살펴보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9개월까지 소요되었으므로,²⁹⁾ 유독 오래 걸렸다고 볼 수 있다. 그 원인에 대한 기록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의궤청에서 발급한 문서의 날짜를 따져보면 당시의 급변했던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의궤청에서는 1882년 2월 29일에 감결을 발급하여 처소에 필요한 물품을 배정한 뒤, 1883년 8월 10일에야 의궤 제작에 필요한 물품을 배정하였다. 그 사이 1882년 6월 9일에 임오군란이 일어났는데, 가례도감과 의궤청의 제조를 맡았던 민경호가 선혜청 당상으로서 원성이 높아 군졸들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후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였다가 청나라에 납치되었으며, 청나라와 일본 양국의 군사 주둔 및 경제 침탈이 이어지는 등 불안한 상황들이 이어져 의궤청의 업무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883년에야 겨우 의궤 제작에 다시 착수할 수 있었고, 1884년 4월 1일에는 수정까지 마쳐서 어람용 의궤의 진상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10월 17일에 일어난 갑신정변으로 왕세자빈의 부친 민태호를 비롯하여 주요 인물들이 살해당하면서 의궤 제작은 다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고, 12월 25일에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즉, 의궤 제작의 실제 소요 시간은 몇 개월 정도에 불과하지만, 국내외의 불안정한 정세에 휘말리면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7)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卷上, 都廳儀軌, 儀軌事目, 甘結, 甲申四月初一日: 本都監 **儀軌搗砧所用**, 加子二部·擔婁槌皮所四良衣·條所三良衣·破油芘二番·草席二立·紅木五幅·袱四件·衛軍四名·搗砧軍十名待令事. 同日, 本都監 **儀軌修正時所用**, 廣刀磨一坐·裁折板一立·方了赤一箇, 用還次進排. **奎章閣件·侍講院件進上時所用**, 紅紬四幅袱二件·紅假函兩隻進排事. 壬午三月十二日戶兵曹了. 爲相考事. 本都監儀軌修正時, 寫字官二人·畫員一人·書吏三人·書寫五人·庫直一名·使令二名·印出匠一名兩朔料布, 依例磨鍊上下爲旆, 守直軍士三名兩朔朔布, 亦爲上下宜當向事.

28)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卷上, 都廳儀軌, 儀軌事目, 甘結, 癸未十二月二十五日.

29) 송혜림(2004), 62.

3.2 관련 기록물과의 비교 분석

3.2.1 발기와의 비교

발기(件記)는 인명, 물품명, 음식명 등을 그 수량과 함께 낱낱이 열거하여 기록한 자료이다. 1882년 왕세자 가례를 위하여 작성된 발기는 총 58건으로 모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발기의 명칭을 비롯하여 각각의 내용, 제작 배경, 자료적 특성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된 바 있다.³⁰⁾ 이에 따르면 1882년 왕세자 가례와 관련하여 제작한 발기 58건은 그 내용에 따라 간택을 위한 발기, 별궁 시절의 발기, 육례를 위한 발기, 시상을 위한 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음식·복식·기물·명단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간택을 위하여 제작한 발기는 10건이다. ‘壬午正月十五日 初揀擇時 進御床·賓床·處子床 件記’【발기1894】,³¹⁾ ‘임오 천만세 동궁마마 가례시 지간택후 보니오실 빈궁마누라 의디 불기’【발기 961】, ‘壬午正月 三揀擇時 宮內人 賞格 件記’【발기1528】 등과 같이 자료 명칭에 구체적인 행사와 기록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자료명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발기를 통해 간택 당시의 상차림, 처자들의 옷차림, 내정된 왕세자빈에게 하사한 의대 내역, 간택에 동원된 내인들의 명단 등을 파악할 수 있다.

1882년 가례 당시 초간택은 1월 15일, 재간택은 18일, 삼간택은 26일에 있었는데, 간택 일시 및 처소를 비롯한 각종 제반 사항들은 모두 예조에서 전담하여 진행하였다. 가례도감은 1월 18일에 첫 모임을 갖고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으므로, 이전부터 진행된 간택은 예조에서 끝까지 맡았던 것이다. 따라서 가례도감의 문서들을 바탕으로 편찬된 『왕세자가례도감의궤』에는 간택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을 수밖에 없다. 『도청의궤』의 ‘전교’에 수록된 예조의 계사와 이에 대한 고종의 전교에서 약간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따르면 금혼령을 내린 뒤 전국에서 처녀단자를 수합하여 간택 단자를 만들고, 간택 일자와 장소를 비롯하여 처자들의 옷감과 처자들이 대궐로 들어오는 문로(門路) 등을 정하는 과정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삼간택에 선발된 처자들의 명단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간택 당시의 음식, 복식, 내인들의 명단 등이 기록된 발기와는 겹치는 내용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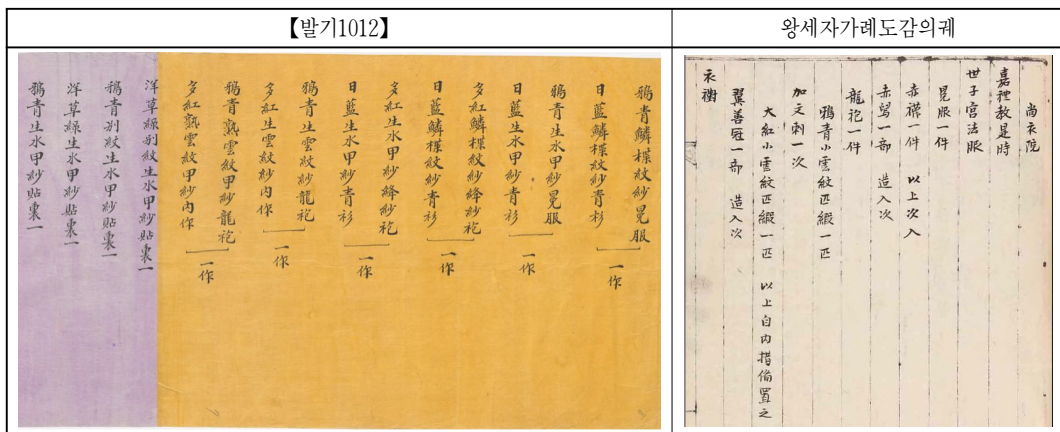
왕세자빈이 간택되면 별궁으로 거처를 옮겨 혼례를 준비하는데, 이때 법복(法服)과 의대(衣櫛)를 비롯하여 각종 예물들이 마련된다. 이를 위하여 제작된 발기가 20건이 있다. ‘壬午二月 千萬歲 東宮 媽媽 嘉禮時 衣櫛 件記’【발기1012】, ‘임오 천만세 동궁마마 가례시 빈궁마누라 의디 불기’【발기 987】, ‘임오 천만세 동궁마마 가례시 룡홍비·침·노리개 불기’【발기1242】, ‘壬午二月 千萬歲 東宮

30) 김봉좌, “왕실 의례를 위한 발기의 제작과 특성 - 1882년 왕세자 가례를 중심으로 -,” 『書誌學研究』 第65輯(2016), 291-330.

31) 장서각 소장 발기들은 왕실고문서로 분류되어 일련의 청구기호가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 발기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발기○○○○】’와 같이 청구기호를 명시하였다.

媽媽 嘉禮時 器皿 發記【발기1720】, ‘임오 천만세 동궁마마 가례시 기소·천의 불기’【발기1083】 등으로, 왕세자의 범복 및 의대, 왕세자빈 의대, 패물, 기명, 이불 등의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왕세자 및 왕세자빈의 복식에 관한 기록³²⁾은 의례의 내용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발기에 기록된 왕세자의 범복은 아청인접문초면복(鴉靑鱗櫟紋紗冕服), 아청생수갑사면복(鴉靑生水甲紗冕服), 다홍인접문초강사포(多紅鱗櫟紋紗絳紗袍), 다홍생수갑사강사포(多紅生水甲紗絳紗袍), 아청생운문사용포(鴉靑生雲紋紗龍袍), 아청숙운문갑사용포(鴉靑熟雲紋甲紗龍袍) 등과 같이 복식의 색상, 문양, 옷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으며, 그 수량도 여러 벌이다. 이에 반해 의례에는 면복(冕服), 용포(龍袍) 등과 같이 복식의 명칭만 기록하였으며 수량도 한두 건으로 많지 않다.



<도 1> 발기 및 의례 속의 왕세자 범복

의례에 기록된 왕세자 복식은 『도청의례』에 수록된 가례도감의 ‘거행물목별단’과 『일방의례』의 ‘상의원’ 항목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 가례도감에서는 본격적인 가례 준비의 계획서로서 ‘거행물목별단’을 작성하였으므로, 1819년(순조 19)의 왕세자 가례를 비롯한 전례에 의거하여 주요 물품의 내역을 열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상의원에서는 가례도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해야 하는 복식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식의 내역을 작성하였다. 즉, 두 기록 모두 가례 복식의 제작을 위한 계획서의 성격이 짙다. 따라서 의례의 기록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 의례와 발기에 기록된 복식을 비교한 연구에서 발기는 실제로 제작한 복식의 내역을 기록한

32) 1882년 가례 당시 발기에 기록된 왕세자 및 왕세자빈의 복식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논문에서 자세히 분석한 바 있다.

안예영, “1882(壬午)年 王世子 嘉禮 研究 - 『가례도감의례』와 『궁중불기』 중심으로 -,” 『藏書閣』第22輯(2009), 107-138.

이민주, “궁중발기를 통해 본 왕실의 복식문화 - 임오가례시(壬午嘉禮時) 생산체제를 중심으로 -,” 『한복문화』 제14집 제2호(2011), 121-140.

이민주, “장서각소장 왕실발기로 보는 순종 가례 복식연구,” 『古文書研究』 第48號(2016), 373-404.

데 반하여 의궤는 전례서(典禮書)로서 실제와 다른 형식적인 내용을 기록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³³⁾ 이와 같이 의궤 기록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게 된 것은 시행계획서를 결과보고서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가례의 주요 의례인 육례(六禮)와 관련된 발기는 9건이 있다. ‘壬午 嘉禮時 差備內人 件記’【발기1704】, ‘임오이월 슈칙시 각즈비관 불귀’【발기1704】, ‘임오이월 가례시 조현 즈비관 불귀’【발기1690】, ‘壬午二月 嘉禮後 初次 宗廟 景慕宮 廟見禮敎是後 媽媽 嬪媽媽 古風 賞格 件記’【발기1546】 등으로, 책빈례(冊嬪禮), 친영례(親迎禮), 동뢰연(同牢宴), 조현례(朝見禮), 묘현례(廟見禮)를 거행할 때 동원된 내인(內人) 및 수복(守僕)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발기에는 내인들의 직무와 이름이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내인들은 교명차비(敎命差備)·죽책차비(竹冊差備)·옥인차비(玉印差備)·명의대차비(命衣襪差備)·독책차비(讀冊差備)·동서창차비(東西唱差備) 등과 같이 의례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고, 전인(前引), 배위(陪衛), 산선차비(緜扇差備) 등과 같이 이동할 때 호위를 맡기도 하였다. 내인들의 이름은 성(姓)이 없고, 학운(鶴雲), 혜순(惠順), 운희(雲喜), 벽영(碧英), 명현(名賢) 등과 같이 비교적 쉬운 한자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의궤에는 내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이들이 맡았던 직무와 비슷한 일을 한 이들의 명단이 보인다. 『일방의궤』의 ‘각차비의녀질’과 『이방의궤』의 ‘의장차비여령질’에는 내인들과 마찬가지로 교명차비, 죽책차비, 옥인차비, 명의대차비 등을 맡은 의녀와 비자(婢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인원수가 거의 동일하다. 이는 의녀와 비자들이 내인들과 같은 차비관의 직무를 맡아 보조하는 역할을 했음을 뜻한다. 반차도에서 교명차비 등이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의궤에는 관련 기록이 없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왕실에 소속된 내인이나 내관 등의 직무는 가례도감의 권한이 아니므로 의궤에 기록하지 않았고, 의녀와 비자들을 차출하고 관리하는 일은 가례도감에서 맡았으므로 이들에 대한 기록만 의궤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가례의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는 가례도감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대대적인 시상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위하여 제작한 발기 19건이 있다. ‘임오이월 가례후 도감 상격호오신 불귀’【발기1569】, ‘壬午二月 嘉禮後 本房 御床進排 所屬 賞格 件記’【발기1531】, ‘壬午二月 千萬歲 東宮媽媽 嘉禮 差備官 內人 兩殿媽媽 賞格 件記’【발기1542】, ‘임오이월 가례시 너인 상격호오신 불귀’【발기1610】 등으로, 가례에 동원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시상 내역이다. 가례도감의 도제조, 제조, 낭청 등의 주요 관원을 비롯하여 세자를 모시는 시강원 및 익위사의 관원들, 가례에 동원된 각 관청의 관원, 내관, 내인들의 직위와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각기 다른 상전(賞典)을 기록하였다. 품계가 높은 관원들보다 하급 관원, 내관, 내인들의 명단이 많으며, 옷감 위주의 상전만 기록한 점이 특징이다.

가례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시상 내역은 『도청의궤』의 ‘상전’ 항목과 비교할 수 있다. 의궤에는

33) 안애영(2010), 168-179.

가례도감에서 올린 별단이 수록되어 있는데, 품계가 있는 관원들의 명단이 많으며, 해당 인물 아래에 각종 말을 지급하거나 품계나 직책을 더해주는 것을 상전으로 하사하였다. 동일한 인물의 시상 내역을 비교해보면, 정사(正使) 영의정 서당보, 부사(副使) 겸예조판서 민경호, 도제조(都提調) 좌의정 송근수에 대하여 【발기1538】에서는 쌍학흉배(雙鶴胸背), 유록운문사(柳綠雲紋紗), 남운문사(藍雲紋紗)와 같은 직물을 하사한 반면, 의례에서는 안장을 구비한 말 1필을 지급한다는 기록만 있다. 그리고 발기에 기록된 하급관원, 내관, 내인들에 대한 시상 내역은 의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상과 같이 58건의 발기와 의례의 기록을 비교한 결과 각 자료의 제작 목적이 다른 만큼 내용 또한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기는 왕실의 음식, 복식, 기물 등을 직접 제작하거나 관리하는 내인이나 내관들에 의해서 작성하는 기록물이므로 이들과 관계된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다. 반면 가례도감의례는 가례도감의 권한이 미치는 영역을 기록으로 남기며, 해당 의례의 종합보고서이자 훗날 동일한 의례의 모범이 되는 전례서로서 중요한 부분만을 걸러서 기록한다. 즉, 발기는 가례도감과 별개로 작성되었으므로 자료 공유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며, 자료를 참조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의례에 수록하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2 등록과의 비교

1882년 왕세자 가례와 관련된 등록은 『별궁내숙설소등록(別宮內熟設所膳錄)』과 『왕세자가례등록(王世子嘉禮膳錄)』이 있다.³⁴⁾

『별궁내숙설소등록』은 안국동 별궁에 설치한 숙설소(熟設所)의 거행 내역에 관한 기록물이다. 숙설소의 위치와 규모, 상차림의 수량 등에 관한 규정이 맨 앞에 있고, 삼간택부터 친영에 이르기까지 주요 의례 때 마련한 상차림의 수량과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왕실에서 내려온 돈과 물품, 각처에서 보내온 그릇들, 상차림 비용과 인건비, 거행 인원의 명단 및 시상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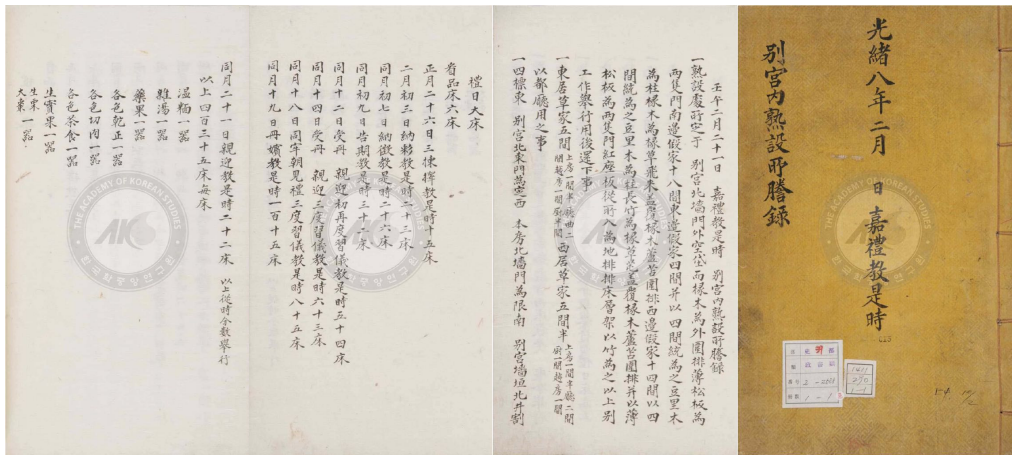
안국동 별궁³⁵⁾은 왕세자빈이 삼간택 날부터 친영일까지 머무는 처소이자 친영례를 거행하는 공간이므로, 잔치 음식을 담당하는 숙설소가 필요했다. 왕세자빈의 본가(本家) 또한 의례의 편의성을 위하여 별궁 근처로 이주하게 했으므로, 납채·납징·고기를 거행하는 날에 오르는 상차림도 별궁

34) 『嘉禮教是時別宮內熟設所膳錄』,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K2-2588.

『王世子嘉禮膳錄』(1882),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K2-2683.

35) 안국동 별궁은 1880년(고종 17)에 왕세자 가례를 위하여 지은 별궁으로, 현재 풍문여고 자리에 있었다. 1936년 민간에 매각된 뒤 별궁 일부는 풍문여고, 한양컨트리클럽의 건물로 사용되었으나, 2007년 문화재청에 기증되어 부여 한국전통문화학교로 이전 복원되었다(姜晉哲, “安洞別宮考,” 『亞細亞女性研究』 2(淑明女子大學校 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1963), 1-24; 金成都, “안국동별궁 조사 후기,” 『建築』 제50권 제4호(대한건축학회, 2006), 88-92.).

내의 숙설소에서 맡았다. 주요 의례를 거행하는 날에는 19그릇의 음식이 오르는 큰 상을 내었는데, 삼간택일 15상, 납채일 23상, 납정일 26상, 고기일 32상, 민수책·친영·동뢰·조현례 습의일 202상, 책빈일 115상, 친영일 22상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삼간택 다음날인 1월 27일부터 친영례 전날 2월 20일까지 16일간 12그릇의 음식이 오르는 중간상 232상을 마련하였다.



<도 2> 『別宮내숙설소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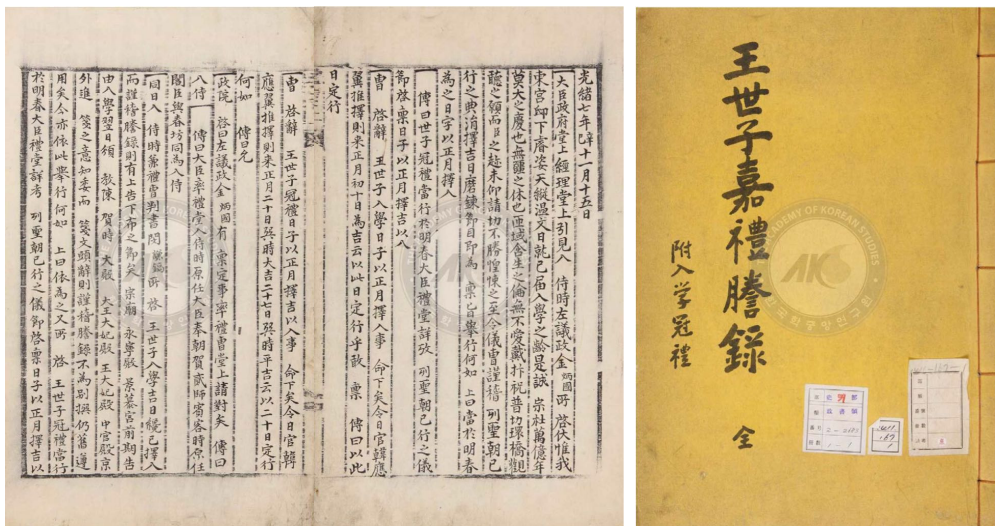
등록에는 상차림의 내역을 「예일대상(禮日大床)」과 「축일중상(逐日中床)」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뒤 수입에 해당하는 「내하질(內下秩)」과 「각처기명봉상질(各處器皿捧上秩)」, 지출에 해당하는 「소입(所入)」을 차례로 기록하였다. 「내하질」에는 왕실에서 내린 돈 17천냥, 쌀 50섬, 무명 2동, 참기름 80말 등의 각종 물품, 「각처기명봉상질」에는 공조(工曹), 별공작(別工作), 반계(盤契), 내외장목전(內外長木塵), 발리전(鉢里塵) 등에서 가져온 각종 기명들을 열거하였다. 「소입」에서는 상차림에 사용된 각종 물품 내역과 인건비를 전문(錢文)으로 환산하여 기록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문 19,665냥 8전이 사용되어 왕실에서 내려온 17천냥보다 2,665냥 8전7푼을 초과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거행원역(舉行員役)」에는 숙설소에서 근무한 감동관(監董官), 패장(敗將), 예방집리(禮房執吏), 서원, 서사, 고직, 조역노자(助役奴子), 숙수변수(熟手邊首), 사환기수(使喚旗手), 대령포교(待令捕校), 포졸(捕卒) 등의 명단과 인원수를 열거하고, 이들에 대한 시상 내역을 기록하였다.

별궁 내의 숙설소에 관해서는 의궤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동뢰연(同牢宴)의 음식을 맡은 내자시(內資寺)의 숙설소에 관한 내용만 보일 뿐이다.³⁶⁾ 내자시에서는 납채·납정·고기·책빈일에 정·부사(正副使) 등을 위한 외선온상(外宣醞床)과 동뢰연에 오르는 상차림을 맡았다. 동뢰연에 오르는 큰 상은 동뢰연상(同牢宴床), 좌협상(左挾床), 우협상(右挾床), 면협상(面挾床) 각 2상을 마련하

36)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卷上, 一房儀軌, 內資寺.

였는데, 상차림의 구성은 1819년(순조 19) 왕세자 가례의 경우와 동일하다.³⁷⁾

『왕세자가례등록』은 예조에서 편찬한 것으로, 왕세자의 입학례(入學禮)를 비롯하여 관례(冠禮), 가례까지의 기록들을 수록하였다. 의례 거행의 논의가 시작되었던 1881년(고종 18) 11월 15일부터 가례가 끝난 뒤 각 궁에 전배했던 1882년(고종 19) 3월 10일에 이르기까지 관련 논의들을 날짜별로 모아 놓은 기록물이다. 날짜별 기록 뒤에는 주요 의례의 진행 절차를 기록한 의주 51건이 수록되어 있다.



<도 3> 『왕세자가례등록』

1881년 11월 15일에는 당시 8살이었던 왕세자의 입학례를 비롯하여 관례, 가례를 모두 내년 봄에 치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왕세자 이척은 1882년 1월 10일에 성균관에 입학하고 곧이어 20일에 관례를 치렀으며, 2월 21일에는 가례를 거행하였다. 왕세자의 주요 의례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거행하였으므로, 택일을 비롯한 각종 논의들이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날짜별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한 등록을 통해 당시 행사 준비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다.

등록의 내용은 주로 예조 관원들이 고종에게 올리는 계사 및 단자, 그리고 이에 대한 고종의

37) 동퇴연의 상차림 구성은 1749년(영조 25)의 『御製國婚定例』를 기점으로 축소되었고, 왕세자 가례는 1819년(순조 19) 효명세자 가례를 통해 정비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1627년 소현세자 가례를 비롯하여 1651년 왕세자(현종), 1681년 숙종, 1696년 왕세자(경종), 1718년 왕세자(경종), 1744년 왕세자(장조), 1802년 순조, 1819년 왕세자(문조), 1837년 현종, 1851년 철종, 1866년 고종, 1906년 황태자(순종) 가례에 이르기까지 동퇴연의 상차림, 찬품, 상화, 기용 등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 바 있다. 여기서 제시한 1819년의 상차림이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의 내용과 일치한다(김상보, “『嘉禮都監儀軌』를 통해서 본 조선왕조 혼례연함음식문화 - 同牢宴 大床을 중심으로 -”, 『湖西考古學』 6·7(湖西考古學會, 2002), 401-471.).

전교로 구성되어 있다. ‘조계사(曹啓辭)’, ‘조단자(曹單子)’, ‘전왈(傳曰)’ 등으로 시작되는 기록이 많으므로, 예조 관원들이 가례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조는 가례도감이 설치되기 전까지 간택을 비롯한 각종 의례의 택일, 절차 등을 맡았고, 가례도감이 해산된 이후에는 묘현례(廟見禮) 등의 후속 의례를 담당하였으므로, 가례 전후의 진행 사항을 자세히 살필 수 있다. 『도청의궤』의 ‘전교’와 ‘예관’ 항목에 수록된 예조의 계사는 모두 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의례는 가례도감 중심의 기록물이므로, 주요 내용만을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예관’의 기사는 1월 25일·28일·29일, 2월 2일·15일에 집중되어 있는데, 등록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예조에서 계사를 올린 날짜가 아니다. 등록에 따르면 1881년 11월 15일부터 1882년 1월 19일까지의 기사가 예관에서는 1월 25일에 수록되어 있다. 가례도감의 설치 이후 예조에서 주요 계사들을 가례도감으로 일괄 보낸 것이다. 이후의 기사 역시 예조에서 여러 날에 걸친 계사들을 모아서 가례도감으로 보낸 것이다.

예조의 주요 업무는 전례에 의거하여 의례의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날짜별 기록물 뒤에 입학례 10건, 관례 15건, 가례 26건의 의주를 수록하였다. 『일방의궤』의 ‘의주’ 항목에 수록된 18건의 의주보다 8건이 더 많다. 가례가 끝난 뒤의 의례로서 ‘왕세자가례 청경친림반교진하의(王世子嘉禮稱慶親臨頒教進賀儀)’, ‘대왕대비전 백관진치사전문표리행례의(大王大妃殿百官進致詞箋文表裏行禮儀)’, ‘왕대비전 백관진치사전문표리행례의’, ‘중궁전 백관진치사전문표리행례의’ 등 교서를 반포하고 축하를 받는 의례 4건과 ‘종묘영녕전경모궁 전하왕비왕세자전알 왕세자빈묘현례시출환궁의(宗廟永寧殿景慕宮殿下王妃王世子展謁王世子嬪廟見禮時出還宮儀)’, ‘종묘영녕전경모궁 전하왕비왕세자전알 왕세자빈묘현례의’, ‘종묘영녕전경모궁 왕비전알의’, ‘종묘영녕전경모궁 왕세자빈묘현례의’ 등 종묘·영녕전·경모궁에서 거행하는 묘현례 4건을 추가 수록했기 때문이다. 예조에서 주요 의례의 절차를 정하면 가례도감에서는 ‘의주소’를 별도로 설치하여 고종 등에게 올리는 ‘의주’와 의례에 참여하는 이들이 사용할 ‘홀기’를 여러 건 제작하였다. 의주의 내용은 가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공유하여 동일한 내용이 등록과 의궤에 각각 수록되었을 뿐, 각 기록물이 서로 참조되지는 않았다.

이상의 등록과 『왕세자가례도감의궤』의 내용을 비교한 결과, 각각 편찬 주체와 목적이 다르므로 서로 참조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조에서 편찬한 등록은 훗날의 참고자료로 이용될 뿐이다.

의궤에 수록된 각종 문서를 보면, ‘근계등록(謹稽謄錄儀軌)’, ‘근고등록(謹考謄錄)’, ‘취고등록(取考謄錄)’, ‘의등록마련(依謄錄磨鍊)’이라 하여 이전의 등록을 참고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여기서의 ‘등록’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문헌을 가리킨다. 『도청의궤』의 ‘전교’와 ‘예관’ 항목에 수록된 예조의 계사에서 ‘등록’을 참고하는 사례가 많은데, 의례의 장소, 일시, 복식, 습의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모두 예조의 업무와 관계된 것이다. 따라서 예조에서 편찬한 등록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일방의궤』·『이방의궤』·『삼방의궤』의 ‘품목’과 『별공작의궤』의 ‘수본’에서는 가례도감에서 편찬한 등록을 참고하였다. 각 방에서 담당한 교명, 축책, 연여, 복식 등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품의 내역을 등록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는데, 예조에서 편찬한 등록에는 수록되지 않은 내용이다. 예를 들면, ‘취고기묘등록(取考己卯臚錄)’ 즉 1819년(순조 19) 왕세자 가례의 등록을 참조하여 막차(幕次)에 배설하는 기물들의 내역을 열거하였는데,³⁸⁾ 당시의 『왕세자가례등록』이 아니라 『왕세자가례도감의궤』에서 동일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³⁹⁾ 또 왕세자 및 왕세자빈의 의대, 상궁·시녀·내인의 의복에 관한 기록이 ‘본방등록(本房臚錄)’에 수록되어 있다⁴⁰⁾는 기사에서 가례도감의 각 방에서 작성한 등록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례도감에서 편찬한 등록은 현재 남아있지 않으나, 가례도감의 주요 참고자료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4. 결 론

가례도감의궤의 체재와 편찬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비교적 현전하는 자료가 많고 역대 가장 성대한 규모로 치러졌던 1882년의 왕세자 가례를 연구 대상으로 정하였다.

『왕세자가례도감의궤』는 가례도감의 조직 구조를 반영하여 『도청의궤』와 『각방의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의궤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급한 각종 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가례에 소용된 인원, 물품 등의 내역과 규모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각 부서의 업무가 완료되면 독자적으로 초등록을 제작하였으며, 의궤청에서는 초등록의 날짜별 기록을 재분류하고 의궤의 체재로 바꾸어 편찬하였다. 의궤는 7건의 복본을 제작하였는데, 규장각과 시강원에 보관하는 건과 예조·정족산성·오대산·태백산·적상산성에 보관하는 건을 구분하여 본문을 기록하는 종이와 표지를 꾸미는 장황을 모두 다르게 만들었다. 규장각건은 고종, 시강원건은 왕세자가 보는 용도이므로, 관원들이 보는 분상건과는 그 형태부터 차별화한 것이다. 왕세자를 위한 의궤는 고종대에만 한정하여 만든 것으로 확인된다. 의궤의 제작 기간은 의궤청이 설치된 날인 1882년 2월

38)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卷上, 一房儀軌, 稟目, 壬午正月二十九日: **取考己卯臚錄**, 則嘉禮教是時幕次排設, 蓮平床二坐及上下排褥席造作進排是如乎, 今番段置依己卯年例, 嬪宮排設蓮平床二坐及上下排褥席, 物力磨鍊, 後錄以稟爲去乎進排事, 各該司良中捧甘, 何如. 【手決內依爲旆, 紅木袱, 以都監措備件取用.】後. 蓮平床二坐 【別工作】, 上排席二件, 每件所入, 別紋席二張半·縹次紅鼎絀四尺七寸·楮注紙一張·紅麻系一錢五分, 褥二件, 每件所入, 白布七幅各長四尺六寸·粟綿花四斤·貿用紫的吐絀四幅各四尺九寸·內拱紅鼎絀三幅各長四尺五寸·縫造紫的真系紅眞系各二錢·麻系三錢, 上排席二件, 每件所入, 彩花席一張·縹次紫的吐絀四尺·楮注紙一張·紅麻系一錢, 下排彩花面席二件, 每件所入, 彩花席二張·縹次紫的吐絀八尺·楮注紙二張·紅麻系二錢·合鑲染廣頭釘三十二箇 【別工作】, 裹紅木七幅單袱二件.

39) 『王世子嘉禮臚錄』(1819),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K2-2682.

『王世子嘉禮臚錄』(1819), 奎章閣 奎13130~13133/藏書閣 K2-2677.

40)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卷上, 一房儀軌, 稟目, 壬午正月十九日: **取考臚錄**, 則世子宮·嬪宮衣衛所用各樣物件, 及尙宮·侍女·內人衣服 載於**本房臚錄**, 而皆自尙方舉行進排爲有置, 考例舉行事, 分付尙方, 何如.

29일부터 완료 보고를 올린 1884년 12월 25일까지 진행되어 약 2년 10개월이 걸렸다. 역대 의궤의 제작 기간이 2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된 점에 비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는 임오군란, 갑신정변 등의 국내외의 급변하는 정세에 휘말린 결과로 보인다.

당시 가례와 관련된 자료로 장서각에 소장된 58건의 왕실 발기, 『별궁내숙설소등록』, 『왕세자가례등록』이 있다. 그 내용을 의궤와 비교 분석한 결과, 의궤의 편찬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기는 왕실의 음식, 복식, 각종 기물 등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내인 및 내관들이 작성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실재를 반영한 기록물이다. 반면, 의궤에는 각종 물품을 제작하기 위한 기안 문서들을 수록하여 그 결과물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발기의 내용과 비교하기 어렵다. 『별궁내숙설소등록』은 안국동 별궁 내에 설치된 숙설소의 업무 기록으로서 주요 의례를 위하여 마련한 각종 상차림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의궤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왕세자가례등록』은 예조에서 올린 기사와 이에 대한 고종의 전교를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므로, 주요 의례의 택일·장소·절차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일부 기록이 의궤의 ‘전교’와 ‘예관’ 항목에 수록되어 있으나, 그 날짜를 대조해보면 예조에서 일괄적으로 가례도감에 보낸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가례도감의궤는 철저하게 가례도감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록한 것으로, 다른 부서에서 작성한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례도감의궤의 체제는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따라서 그 편찬 과정 또한 당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개별 의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는 조선 왕실의 기록물 편찬에 관한 주요한 단서를 제공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원전자료

- 『別宮內熟設所膳錄』(1882). 장서각 K2-2588.
- 『王世子嘉禮都監儀軌』(1762). 규장각 奎13114~奎13115 / 장서각 K2-2602.
-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19). 규장각 奎13130~奎13133 / 장서각 K2-2677.
- 『王世子嘉禮都監儀軌』(1882). 규장각 奎13174~奎13178 / 장서각 K2-2678.
- 『王世孫嘉禮膳錄』(1762). 장서각 K2-2675.
- 『王世子嘉禮膳錄』(1819). 장서각 K2-2682.
- 『王世子嘉禮膳錄』(1882). 장서각 K2-2683.
- 『藏書閣李王室古文書目錄』.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 『古文書集成』12~1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

2. 논문 및 저서

- 姜晉哲. “安洞別宮考.” 『亞細亞女性研究』 제2집(1963). 1-24.
- 김문식. “儀軌事目に 나타나는 의례의 제작 과정.” 『奎章閣』 第37輯(2010). 157-187.
- 김봉좌. “왕실 의례를 위한 발기[件記]의 제작과 특성 - 1882년 왕세자 가례를 중심으로 -.” 『書誌學研究』 第65輯(2016). 291-330.
- 김상보. “『嘉禮都監儀軌』를 통해서 본 조선왕조 혼례연향음식문화 - 同牢宴 大床을 중심으로 -.” 『湖西考古學』 第6·7輯(2002). 401-471.
- 金成都. “안국동별궁 조사 후기.” 『建築』 第50卷 第4號(2006). 88-92.
- 송혜림. “朝鮮朝 嘉禮都監儀軌의 書誌學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 안애영. “1882(壬午)年 王世子 嘉禮 研究 - 『가례도감의궤』와 『궁중발기』 중심으로 -.” 『藏書閣』 第22輯(2009). 107-138.
- 안애영. “임오(1882)년 가례 왕세자·왕세자빈 복식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0.
- 이민주. “궁중발기를 통해 본 왕실의 복식문화 - 임오가례시(壬午嘉禮時) 생산체제를 중심으로 -.” 『한복문화』 제14집 제2호(2011). 121-140.
- 이민주. “장서각소장 왕실발기로 보는 순종 가례 복식연구.” 『古文書研究』 第48號(2016). 373-404.
- 최은영. “『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의 편찬과정과 기록학적 가치.”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9.

